

7월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지난 2018년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오는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서둘러 1주 52시간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50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규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